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 9. 28 (수요일), 14:00 ~ 17: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학범, 김용준, 류제현, 안계복, 우경식,  
이두표, 이상석, 전영우, 황재하(이상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통영 옥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공 개)
2	「통영 추도 후박나무」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공 개)
3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주변 선인장 전시관 신축	(공 개)
4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입목 벌채	(공 개)
5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공 개)
6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삼락생태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	(공 개)
7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건설	(공 개)
8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보트 면허시험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공 개)
9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단독주택 신축	(공 개)
10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주변 크루즈 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 변경허가	(공 개)
11	「부여·청양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주변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	(공 개)
12	「산양」 보호구역내 국가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공 개)
13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14	「향로봉·건봉산천연보호구역」 내 *** **도로 개설	(공 개)
15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주변 성산리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 신축	(공 개)
16	「제주 수산리 곶술」 주변 포제단 비가림시설 설치	(공 개)
17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공 개)
18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주변 담수보 설치	(공 개)
19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건물 신축	(공 개)
【보고사항】		
2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18건)	(공 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6-09-01

**1. 「통영 옥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통영시 옥지면 소재 천연기념물 제343호 「통영 옥지도 모밀잣밤나무 숲」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일부 해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통영 옥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6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16.7.23.)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구역 일부 해제 예고일 : '16.8.5.
- 지정구역 일부 해제 예고기간 : '16.8.5~9.3.
- 지정구역 일부 해제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43호 「통영 옥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옥지면 동항리 산 108-1번지 등
  - 지 정 일 : 1984. 11. 19.
- (3) 신청내용
  - 1필지 153㎡(문화재구역 해제)

소재지	기 지정면적			일부 해제 면적			해제 후 지정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해제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경남 통영시 옥지면 동항리	4	42,908	18,737	1	534	153	3	42,374	18,584

(4) 해제사유

- 일부 해제 문화재구역은 지정 당시부터 모밀잣밤나무가 없는 지역으로 석축 및 훼손로 문화재구역에서 분리되어 민가와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산109-1번지에서 산109-23번지로 토지 분할된 필지임
- 이에 따라 산109-23번지 534㎡ 중 지정 당시부터 모밀잣밤나무가 생육하고 있지 않은 지역(153㎡)을 문화재구역에서 제외함

**라. 검토의견(\*\*\*\*\*)**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일부 해제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해제 예고(안)대로 해제함이 타당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2016.7.19.)

- 옥지도 모밀잣밤나무 문화재구역은 지정 당시 3필지 18,737㎡가 동서 방향으로 약 200여m 이격되어 2개소로 나누어 지정되었음
- 금번 문화재구역 조정 대상은 서쪽 지정구역 산109-1번지 중 남쪽 해안 도로변 산109-23번지(153㎡)로 지정당시에도 주택이 위치해 있었고 모밀잣밤나무가 생육하고 있지 않은 지역으로 문화재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바. 해제지역 대상 및 범위**

‘통영 옥지도 모밀잣밤나무’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남 통영시 옥지도 동항리	산109-23	임야	534	153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21길 ***-*, *동 ***호
합계				534	153		

‘통영 옥지도 모밀갯밭나무’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후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남 통영시 옥지면 동항리	산108-1	임야	22,113	13,662	경상남도 (교육감)	
2	"	산108-6	임야	300	300	전** ***-*	거제군 상송포읍 상송포리
3	"	산109-1	임야	19,961	4,622	김** *동 ***호	서울 종로구 진흥로 21길 ***
합계				42,374	18,584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9명

안건번호 천기 2016-09-02

2. 「통영 추도 후박나무」 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면 소재 천연기념물 제345호 「통영 추도 후박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통영 추도 후박나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6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16.7.23)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일 : ‘16.8.5.
  -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기간 : ‘16.8.5~9.3.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45호 「통영 추도 후박나무」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면 추도리 508
  - 지정일 : 1984.11.25.
- (3) 신청내용
  - 1필지 540㎡ 중 434㎡

소재지	기 지정면적			추가 지정 면적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	1,263	314	1	540	434	5	2,718	748

(4) 지정사유

- 문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 우려가 있는 건물·토지 매입(부분 매입)으로 문화재로 인한 재해방지 및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추도 후박나무의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음

라. 검토의견(\*\*\*\*\*)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지정 예고(안)대로 보호구역 추가 지정함이 타당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서면검토 의견 및 관리단체 의견 등)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2016.7.19.)

- 추도 후박나무는 남쪽 소계곡부 비탈면에 자라고 있는데 북쪽은 민가 담장과 인접하여 생육공간이 협소하고 후박나무 수관 밑에 민가가 위치하고 있어 후박나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후박나무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바.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통영 추도 후박나무’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08	대지	540	434	김**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
합계				540	434		

‘통영 추도 후박나무’ 보호구역 추가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08	대지	540	540	김**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
2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10	대지	260	39	김**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
3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10-3	전	146	32	김**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
4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13	답	317	27	김**외 1	경남 통영시 도천상가안길 9, ***동 ****호
5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14-5	임	1,455	110	국유	
합계					2,718	748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9명

### 3.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주변 선인장 전시관 신축

#### 가. 제안사항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주변 선인장 전시관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주변 선인장 전시관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16년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2차례 부결되었으나 신청인이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2016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7.27) 시 '부결'
  - 월령리 선인장 군락으로 진입하는 초입부에 위치하여 방문객의 조망 시야를 가리고, 선인장 군락과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어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2016년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8.24) 시 '부결'
  - 월령리 선인장 군락 초입부에 전시 및 판매시설 신축은 방문객 조망 시야를 가리고, 천연기념물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9호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59-3번지 등
  - 지정일 : 2001.9.1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선인장 전시관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75-1번지

#### ○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 (‘16.7.27/부결)	2차 신청 (‘16.8.24/부결)	금회 신청	비고
대지면적	651㎡	좌동	좌동	
건축면적	208.47㎡	108.81㎡	99.83㎡	감) 8.98㎡
연 면 적	164.02㎡	108.81㎡	99.83㎡	감) 8.98㎡
구 조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좌동	좌동	
최고높이	4.5m(지상 1층)	좌동	4.35m(지상 1층)	감) 0.15m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좌동	좌동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연결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 1구역(2층 이하 증·개축 허용)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문화재구역과 연결한 1구역에 선인장 전시관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16년 문화재위원회에서 2차례 부결되었으나 신청인이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재신청함
- 사업 대상지가 선인장군락 관람동선 시점부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 시야가 일부 차폐될 수는 있으나, 신청인이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였고 전시관이 신축될 경우 주변의 야외공연장과 연계하여 선인장군락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9.21)

- 천연기념물 429호 월령리 선인장 군락지의 입구에 선인장 전시관을 신축하고자 3번째 신청한 건임
- 2차 신청 시 제출한 계획보다 건물의 면적과 높이를 조금 더 축소하여 재신청한 건으로 1차 및 2차 신청 시 준비하지 못했던 전시관의 전시물 내용, 마을 공동체와 선인장 재배농가를 위한 기여, 선인장 군락의 보호 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 문화재청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토지소유자와 매입가격 산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이런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8차 문화재위원회 서면검토 의견 >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8.19)

- 금회 신청한 건축면적은 1차 신청면적에 비해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연면적도 약 1/3정도 감소된 것은 긍정적임
- 비록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감소되었을망정, 문화재와 연결한 1구역에 전시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건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매입이나 다른 용도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8.19)

- 1차 신청보다 건축규모를 축소하여 경관적 개방성은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차단은 불가피함
- 전시관 신축으로 인한 천연기념물의 공공성 및 자연성 훼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7차 문화재위원회 서면검토 의견 >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7.1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75-1번지에 천연기념물 429호 선인장 군락지와 연결 지역에 선인장 전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임
- 선인장 전시관의 신축 예정지는 천연기념물 429호 선인장 군락과 연결지역으로 문화재(선인장 군락지)와의 이격 거리가 충분하지 못함
- 신축 예정인 전시관의 활용목적은 선인장 전시의 고유목적과 함께, 연구개발 및 전시 판매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목적까지 지향하다 보니 전시장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된 감이 있음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차원에서 선인장의 생육에 저해할 수 있는 환경 요인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7.15)

- 본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429호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제1구역에 지상 1층 (최고높이 4.5m), 건축면적 208.47㎡ 규모의 신축사업으로 선인장 전시관 신축을 통하여 연구개발 및 전시판매, 군락지 홍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전시관이 월령리 선인장군락으로 진입하는 초입부에 위치하여 방문객의 조망시야를 심각히 가리고, 천연기념물 선인장군락과 지나치게 가깝게 위치하여 선인장군락의 훼손이 우려됨
- 전시관을 마을 쪽으로 이동배치하고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여 선인장군락 조망을 확보하고 경관의 쾌적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설 이용에 따른 선인장군락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해야 함

(신청인 제출의견 / 2016.9.26)

- 별첨

바. 의결사항

- 부결
  - 월령리 선인장 군락 초입부에 전시 및 판매시설 신축은 천연기념물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 월령리 선인장 전시관



## 01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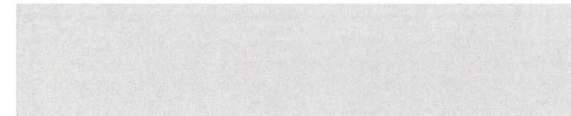
1) 사업명 : 제주도 월령리 선인장 전시관

2) 대상문화재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천연기념물 제429호)

3) 사업 시행자



4) 사업 배경

제주도 월령리 선인장 군락지는 국내 유일의 아생군락지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지속적인 연구, 관리 및 홍보가 미약한 실정임.

5) 사업 목적

선인장 연구-개발 및 전시-판매를 위한 전시관을 신축하여, 선인장 군락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선인장의 학술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도모하고자 함.

6) 공간활용

온실 형태의 전시관은 우리의 반사성과 투명성을 통해, 주변 경관을 반사시키고 내부에 전시된 선인장을 드러내어 외부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방문객의 체험 유도.

- 전시장: 선인장 및 관련 제품을 내외부에 전시 및 판매
- 연구실: 선인장 연구 및 개발 (월령 선인장마을 재배 백련초등을 활용하여 향토 식품 개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 다목적홀: 선인장 관련 각종 이벤트 (체험공방운영, 축제, 강의, 워크숍, 식음행사 등) 유지
- 야외전시장: 선인장 재배를 통한 연구 개발 및 체험 유도

### 7) 문화재 지킴이 역할 수행

- 문화재 지킴이의 역할 : 군락지 내에 방치된 선인장의 고사, 훼손 심각  
-> 문화재 지킴이로 군락지 경관 관리
- 선인장 군락지 주변의 쓰레기, 잡초 등 관의 집중 관리 부족  
->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주변 관람로 등의 자치적이고 주기적인 시설물 관리
- 천연기념물 문화재 안내자 역할  
-> 관광객 이용에 따른 문화재 안내, 주의, 쉼터의 역할



### 8) 선인장 마을 지역 사회 공헌

-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협의회를 통해 천연기념물 자생지 관리 및 홍보  
-> 다양한 축제 및 플라마켓을 통해 활성화
- 선인장 관련 다양한 제품 및 프로그램 개발  
-> 낙후된 농가의 추가소득 기여, 지역민 일자리 창출 기여
- 선인장 군락지에 대한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모색  
-> 문화재 수호대 자발적 참여 유도



### 3. 공간 활용 선인장 군락지 홍보 & 소통

#### 1) 선인장 체험 공방 운영

-> 선인장 군락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체험 관광 기회 -> "소통기회 확대"



선인장 화분 만들기, 비누, 화장품, 쉼터 같은 체험 관광

#### 2) 선인장 연구소 운영

-> 월령 선인장마을에서 재배되는 선인장. 백련초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월령리 선인장마을에서 재배되고 있는 선인장의 열매와 줄기에 다량의 칼슘과 철분, 풍부한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는 순수한 자연식품. 인근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선인장을 활용한 제품들을 개발 하여 지역농가 소득증대 기여"





## 02 전시

### 1) 상설전시\_ 선인장 군락지 천연기념물

-> 선인장 군락지 문화재 가치를 전시하여 군락지 방문객 관람의 이해를 돕고 문화재 홍보 역할을 도모하고자 함.



#### 월령리 선인장 군락 자생지 역사와 유래

열대지방으로 부터 해류를 타고 밀려와 야생하게 된 우리나라 유일한 선인장 군락지로 천연기념물 429호로 지정되었다. 그 선인장 몸체가 해류에 의해서 이곳까지 밀려오고 해면의 모래밭 또는 바위 틈에 올라와서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곳 주민들은 선인장 모양이 손바닥처럼 생겼다하여 '손바닥 선인장'이라 부른다.



#### 선인장 군락 자생지 문화재 가치

월령리 해안 자생의 선인장군락을 중심으로 7149㎡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월령리 선인장군락은 선인장 자생상태를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유일의 야생군락으로 분포적인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제주 월령리 손바닥 선인장 꽃과 백년초

월령 선인장들은 상큼한 초록빛으로 7월이 되면 노란 꽃이 피고, 11월에는 보라색 열매가 맺힌다. 이 열매가 백년초 열매이다. 선인장은 화상, 이뇨작용, 피부질환등에 효과가 있으며,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해열제나 소담제로도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백년초의 여러 효능이 알려지면서 제주도 월령리 주민들의 고소득 작물이 되었다

### 2) 기획전시\_ 선인장 체험형 전시기획" -> 월령리 손바닥선인장 및 회귀



선인장 등을 기획전시 -> 반려식물등 일상적 가치 전달하는 선인장 전시



### 3) 선인장 마을 향토 제품 전시

“ 한정된 공간과 전시관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판매를 위한 공간은 최소화하고 온라인 판매나 선인장마을 협의체와의 플라마켓을 활용”



온라인 판매



플리마켓



향토제품



기념품

## 04 운영 및 관리

### 1) 선인장마을 민관 유기적 협의체를 구성

“ 지역사회 공헌 및 문화재 수호역할”

: 선인장 군락지에 대한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모색

-> 문화재 수호대 자발적 참여 유도

: 다양한 제품을 개발 및 홍보 역할

-> 낙후된 농가의 추가소득 기여, 지역민 일자리 창출 기여

### 2) 선인장/백련초 축제 및 다양한 이벤트 진행

-> 천연기념물 자생지 홍보 및 제주의 새로운 명소, 제주도민과 관광객 유치

“ 선인장마을민관 협의체”



### 3) 정기적 워크숍 & 봉사 모임 운영

-> 월령리 선인장군락지 가치개발 및 보존 관리





“ 월령리 선인장 전시관은  
문화재 가치의 보존과 조화를 통해  
선인장 군락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문화재 지킴이'가 될 것 입니다 ”

#### 4.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입목 벌채

##### 가. 제안사항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입목벌채 후 조경수 생산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입목벌채 후 조경수 생산’을 위해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32번지 임야에 소나무류를 제외한 전면 적 벌채(주수종 밤나무)하고 추후 산지를 복구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경기도 성남시)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 지정일 : 2000.07.0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입목벌채 후 조경수 생산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32
    - 사업내용 : 입목벌채 후 조경수 생산
      - 벌채예정수량 : 밤나무 등 2,607본 333.12㎡(벌채면적 22,413㎡)
      - 조림계획 : 구상나무 외 6,724본(식재면적 22,413㎡)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6.9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50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3구역(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해상에 소재한 말도 육상부(허용기준 상 3구역) 지역의 밤나무 등 입목 벌채 후 조경수 생산을 위해 구상나무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 9. 26)**

- 강화군 서도면 말도의 허용기준 3구역에 해당하는 입야(경사도 경)에서 입목벌채(면적 2.24ha) 후 조경수를 식재 및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임
- 위치는 산 정상(70.5m)에서 서쪽 사면으로 아래쪽 일부는 농경지와 맞닿아 있음
- 벌채 대상수종은 밤나무(수령 31년)와 참나무류(수령 15~45년) 2,607본이며, 입목벌채후 작업로 개설과 산림경영관리사 신축이 포함되어 있음
- 말도 인근에 분포하는 바위섬(석도, 비도 등)은 저어새의 번식지 또는 휴식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갯벌은 취식지로 이용되고 있음
- 사업시행으로 인한 과도한 경관의 변화는 일시적으로(산림벌채로부터 조경수 식재기간 동안) 저어새의 서식 및 갯벌의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사업시행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5.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해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0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송정선착장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선착장 일원
  - 사업목적 :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어선 긴급 육지 인양으로 해난사고 예방 및 어업인 재산을 보호하며, 평시 수산물·어구 등 상하역 작업으로 어업생산성을 향상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촌복지 증진에 기여함
  - 사업내용 : 소형 어선인양기 5톤(하부회전식) 1대 설치
    - 크레인 본체의 제작 및 설치(회전 자동)
    - 운반, 설치, 시운전
    - \*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선박 육지인양으로 재산보호 및 해난사고 예방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1.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소형 선박인양 크레인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 내 송정선착장 설치장소로 이송한 이후 기초 터파기 및 기초 토목 공사를 한 장소에 설치하여 어선 육지인양 및 수산물, 어구 등 상·하역 작업을 하는 사항으로, 철새의 도래 및 서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9.26.)

- 부산 \*\*\*\*에서 자연재해 시 선박의 육지인양 등 해난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송정선착장 내에 소형선박 인양 크레인을 높이 10m, 팔길이 10m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 설치예정지는 어선의 출입이 잦은 선착장으로, 인접하여 신호공단이 위치해 있어 크레인의 설치 운영이 낙동강 철새들의 도래 및 서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근에 도래 서식하는 철새들의 안전한 서식을 위해 크레인의 색상을 갈색(나무색) 계열로 도색하고, 현장의 지반 기초작업, 크레인 현장조립작업 등 소음진동이 크게 발생하는 공사는 철새도래시기인 11월~2월에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철새 도래시기(11월~2월)에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설치공정을 피하고, 크레인 색상을 갈색 계열로 도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 가결 9명

6.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삼락생태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삼락생태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 」 주변 삼락생태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1,500㎡~2,000㎡)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0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반려견 놀이터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 삼락생태공원 내
  - 사업내용 : 반려견 놀이터 1,500㎡~2,000㎡
    - 반려동물 안전시설 : 철제 안전펜스
    - 반려동물 운동시설 : 어질리티(장애물 경주시설)
    - 반려견 소유자 편의시설 : 파고라(빛 가림 시설)
    - 기타 : 안내 입간판, 애완견 음수대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 4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인접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부산지역 전체 가구수의 11%(15만 가구)로 추정되는 애견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 조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낙동강 철새 도래지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삼락생태공원 내에 반려동물 안전시설 및 운동시설, 편의시설, 음수대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철새의 도래 및 서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8.19.)**

- 낙동강 삼락생태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안전펜스, 경주시설, 파고라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임
- 조성예정부지는 공원내 도로 및 경전철 노선의 교각과수로 사이에 위치하며, 잔디가 조성되어 있음
- 조성부지가 시설이용지구가 아닌 낙동강에 가까운 철새보호를 위한 유보지역 또는 완충지역에 해당되나, 부지 위로 경전철이 수시로 통과하여 교란이 심하고 철새의 서식에 부적당한 잔디밭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구역인 낙동강 수계와 인접지역으로 철새보호를 위한 보존지역에 해당하므로, 시설물의 설치와 이용에 따른 철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7.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건설**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건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부산 명지지구 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열1블럭'에 신재생 발전시설 건설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사하구·사상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명지지구 신재생 발전사업 건설공사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07번지 641호(명지지구 열1블럭)
    - \* 명지지구 집단에너지 열원설비 부지 내 위치
  - 사업내용
    - 사업시행 면적 : 열공급설비 부지 내 신재생 발전설비 9,917㎡
      - \* 열공급설비 부지 면적 : 11,068㎡(집단에너지 시설)
    - 건축 개요
      - 총괄현황

구분	내용	비고
부지면적	9,917.41㎡	
건축면적	3,662.29㎡	
연면적	5,661.97㎡	
건폐율	36.96% < 법정 : 50% 이하	
용적률	57.09% < 법정 : 250% 이하	
주용도	발전시설(열공급설비시설)	
규모	10개동	
주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물 현황

건물명	층별
종합관리동	지상 4층
수폐수처리동	지상 2층
연료하역동	지상 2층
보일러동	지상 1층
전기동	지상 1층
경비동(발전)	지상 1층

· 공작물 현황

공작물명	규격
연돌	Ø4.64m * 59m
COOLING TOWER	9m*18m
BAG FILTER	10.6m*15m
WOODCHIP SILO	Ø16m
FLY ASH SILO	Ø6.1m
순수탱크	Ø14.5m
원수탱크	Ø6m
A/C STORAGE FACILITY	4m*10m
기타 5개 공작물	-

\* 연돌 높이 검토 : 연돌 높이 및 대기오염물질 착지 농도 검토 결과, 연돌높이는 102m가 적당하나, 인근 명지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열원설비의 연돌 높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허가조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5987(2015.10.5.)>과 동일한 높이인 59m로 적용하였으며 5구역에 위치하도록 설계함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0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00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 및 5구역(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름)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부산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열 1구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구조물 건설 및 배출물질 등에 의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9.26.)

- 부산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열 1구역(현상변경 2, 5구역)의 LNG 열공급시설(15년 10월 허가)에 인접하여 바이오연료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임
- 사업부지가 LNG 열공급시설보다 문화재 구역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철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보류 9명



## 8.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보트 면허시험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보트 면허시험 대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보트 면허시험 대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보트 운행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2015년 제11차(15.11.25.), 제12차(15.12.16.) 및 2016년 제4차(16.4.27.)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문화재구역 내 보트 면허시설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보트 운항 등에 따라 철새 도래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보트 운항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사하구·사상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보트 면허시험 대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천607번지
  - 사업내용 : 보트 면허시험 대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보트 운항
    - 시설물 설치 : 푼툰(계류시설) 설치(25m×10m), 부표설치(5m<sup>3</sup>) 3개
    - 보트 운항코스 : 길이 500m, 너비 2.5m \*소형보트 2대 및 비상구조선 1대
    - 보트 운영기간 및 횟수(시험 및 수상안전교육) : 연 112시간(4~10월)

- 해당지역 수중정화 행사 실시 후 매년 말 활동현황 문화재청에 보고
- ※ 그간 신청 및 변경현황(보트 운영기간 및 횟수)

구분	1차(15.11월)	2차(15.12월)	3차(16.4월)	금번(16.9월)
보트 운영 기간 및 횟수	· (1~4월, 9~12월) 월 12회 (1회당 약 5시간 운항) · (5~8월) 월 16회 (1회당 약 6시간 운항)	· (4~10월) 월 3회 (1회당 약 6시간 운항)	· (4~10월) 연 8회 (1회당 약 6시간 운항)	· (4~10월) 월 4회 (1회당 4시간 운항)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4.3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낙동강변 지정구역 내에서 보트 면허시험 대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보트 운항에 대하여 보트 운항기간을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금회 신청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16.9.26.)

- 낙동강 본류의 엄궁선착장(어민 이용중)을 이용하여 보트면허시험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새의 도래 및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이미 3차례(15년 11월, 12월, 16년 4월)에 걸쳐 부결된 사업임
- 금회 보트 운항시간 및 횟수를 변경하여 신청되었으나, 철새의 도래 및 서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전과 동일하다고 판단됨

#### (3차 신청 시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16.4.4.)

- 지난해 11월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된 건임
- 겨울철새의 도래기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는 하나, 사업예정지 일대의 갈매기류의 휴식 및 먹이터로 이용되고 있어 면허시험장의 운영에 따른 소음, 기름오염 등은 이들의 번식 및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낙동강 철새도래지의 보존을 위해서는 청정환경 유지와 서식환경의 교란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운항하고 있는 생태 탐사선과 어선 등 교육 홍보 및 어민들의 생계유지를 제외한 선박의 운항은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1차 신청 시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15.11.17.)

- 본 신청 건은 기존의 엄궁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엄궁 선착장 어선 계류 시설에 연결하여 보트 계류시설(500m×2.5m)과 부표(5㎡, 3개)를 설치하고 보트조정 면허시험장을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임
- 신청지역은 물닭, 오리류, 갈매기류 등의 철새가 도래 서식하는 지역으로, 연중 월 12회~16회의 보트운항이 계획된 면허시험장의 운영은 낙동강 철새의 도래 및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구역내 보트면허시험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보트운항에 따라 철새 도래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안전번호 천기 2016-09-09

9.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본 사업은 2016년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6.22)에서 '해당 건축물 규모는 철새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부결되었고, 2016년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8.24)에서 '사업 시행에 따라 철새 도래, 서식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사하구 · 사상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840-34번지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구 분	1차 신청 ('16.6.22./부결)	2차 신청 ('16.8.24./부결)	금회 신청	변경사항
건축면적/연면적	186.7/ 231.7㎡	184.9/ 227.9㎡	184.9/ 227.9㎡	건축용도 변경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 단독주택)
높이	11m(평지붕)	8.8m(평지붕)	8.8m(평지붕)	
건축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단독주택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11.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 신청 사업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중사도 내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철새 도래·서식 등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금회 건축용도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 >**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9.26.)

- 서낙동강변 문화재구역 내에 2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용도를 근린생활 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여 세 번째 신청된 건임
- 철새에 미치는 영향은 전과 동일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제8차 위원회 건축규모 축소에 대한 검토의견 >**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8.18.)

- 서낙동강 중사도 문화재구역 내의 경작지에 근린생활시설을 2층(1층 영업장, 2층 주거용)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위원회에서 부결 되었으나, 건물 높이를 2.2m 낮추어 8.8m 높이로 재신청된 건임
- 서낙동강과 제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결한 문화재구역 내에 2층 건물의 신축은 철새의 도래 및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제6차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6.17.)

- 중사도의 문화재구역 내에 근린생활시설 2층(1층 영업장, 2층 주거용)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신청부지에 인접하여 농가주택(1층)이 서너채 있으며 주변은 경작지로 비닐 하우스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신청부지는 제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낙동강에 인접해 있어 2층 건물의 신축은 철새의 서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사업시행에 따라 철새 도래, 서식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안전번호 천기 2016-09-10

**10.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주변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주변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주변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을 위한 현상 변경 조건부 허가사항(16.5.2.)의 크루즈터미널 연면적 및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역(90백만㎡)
  - 지정일 : 2004.12.3.
3. 신청내용
  - 사업명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4676 번지 외 22필지
  - 사업내용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

구분	당초(16.5.2.)	변경(금번 신청사항)
건축물 신축	크루즈터미널(3층, 연면적 6,601.63㎡) 주민편의시설(3층 연면적 1,327.26㎡) 최고높이 14.95m (외벽) THK40 제주석, 노출콘크리트 THK28 투명복층유리 (지붕) THK07 VM ZINC, 콘크리트 평지붕, 단열재 THK100 폴리우레탄폼	크루즈터미널(3층, 연면적 9,666.01㎡) 주민편의시설(3층 연면적 1,195.18㎡) 최고높이 15.45m (외벽) THK40 제주석, 노출콘크리트 THK28 투명복층유리 (지붕) THK07 VM ZINC, 콘크리트 평지붕, 단열재 THK100 폴리우레탄폼
주차계획/조정면적	승용차 42대, 버스 16대	승용차 64대, 버스 30대, 경형 10대, 장애인 6대, 전기차 2대
배후지시설(친수공원)	18,382㎡/올레길 연계	8,677.38㎡
기타시설	계류 및 친수시설 192.5m, 진입도로 401.62m 매립 및 포장 등 부지조성, 상하수도, 전기· 통신·소방공사, 폐기물처리, 부대공사 1식	계류 및 친수시설 192.5m, 진입도로 401.62m 주차부스 9㎡, 매립 및 포장 등 부지조성, 상하수도, 전기·통신·소방공사, 폐기물처 리, 부대공사 1식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2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50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제주 서귀포 강정항 일원에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을 위한 것으로 '16.5.2일자 '공사 중 부유사, 오염물질 저감대책 마련 및 시행'을 조건으로 현상변경 허가되었으며 오락방지막 및 필터매트 설치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2016.9.26.)**

- 공사지점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의 확산방지 여부가 주변의 연산호군락에 대한 피해방지의 핵심관건으로 판단됨. 강정항 방파제 주변은 연산호 군락이 미비하지만, 방파제 남향 100m 정도 멀어지면서 돌출된 해저암반에 분홍 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등 우점종 출현이 서서히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는 곳이며, 주변의 범섬, 기차바위의 우수한 보존군락과 생태적 연계성을 가지는 지점임
- 공사지점이 기존의 강정항 방파제에 둘러쌓여 있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오락방지막 설치와 운용이 된다면 연산호 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2014년 당초 허가 전 현지조사 의견/2014.6.12.>**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신청사업은 강정항(어항)의 일부 구간을 매립하고 포장, 계류, 친수시설, 크루즈 터미널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별 문제 없는 사업으로 판단됨.
- 공사 시 발생하는 오락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해야 할 것임.
- 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유물 출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사시 유의하여 시공해야 할 것임.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본 건은 기본적으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매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락수 배출은 관리대상이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진입로의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해신당의 훼손은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임.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락수 저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신당과 주변 식생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조경수를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식재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공사 시 부유사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오락방지막 설치, 공사 중 유류 유출 등 해양오염 방재체제를 구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조건부 가결 8명

## 11.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주변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

### 가. 제안사항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주변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주변 지렁이 사육시설(지렁이먹이 보관장소의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33호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금압리 일원,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원
  - 지정일 : 2011. 09. 05.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충남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799
  - 사업내용 : 지렁이 사육시설(지렁이먹이 보관시설, 부속창고, 사무실) 설치
    - 신청면적 : 1,984㎡
    - 건축규모 : 총 건축면적 488.60㎡
      - 지렁이먹이(유기성 오니) 보관시설 : 336.60㎡, 지상1층, 일반철골구조, 11.7m
      - 부속창고 : 98㎡, 지상1층, 강파이프구조, 5.7m
      - 사무실 : 54㎡, 지상1층 기타강구조, 2.6m
    - 건폐율 : 24.62%(법정60%)
    - 용적율 : 24.62%(법정80%)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 11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86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 라. 검토의견(\*\*\*\*\*)

- 천연기념물 제533호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으로부터 약 285.8m 이격된 지역(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에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유기성 오니'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미호종개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대학교 교수 서면검토 의견/2016.09.26)

- 사업자가 신청한 지렁이 사육시설 먹이는 하수처리장 찌꺼기를 말하며 이는 중금속, 유기물질 등의 오염물질 함유량이 높은 폐물관리법상의 지정폐기물에 해당함
- 이의 저장 및 처리, 처분을 위해서는 외부 유출이 없음을 신뢰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야 함
- 본 신청 시설의 경우 저장 시설의 지붕이 천막으로 설치되어 태풍, 폭설, 강우 등에 의한 안정성을 신청자료 만으로는 결정하기 곤란함
- 따라서 추후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신뢰성이 제고될 경우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보류 8명

## 12. 「산양」 보호구역내 국가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보호구역내 국가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를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보호구역내 국가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및 안내판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2) 신청목적 : 춘천댐 유역의 관입화성암 분포지역내 지하수 수질 관측 및 설치된 측정망을 통해 지하수 수질현황과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지하수 수질 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3) 신청지역 : 양구군 동면 팔랑리 247번지
- (4)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 2016.12.31.까지
- (5) 신청내용 : 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설치 및 안내판 설치
  - 총 설치면적 : 약 3.6㎡
    - 상부보호시설 및 홍보시설(평면형) 3.6㎡×0.6㎡ = 2.16㎡
    - 홍보시설(입식형) 약 1.44㎡
  - 3개 관정 깊이 심도 : 천부관정 10m, 심부 1관정 30m, 심부 2관정 80m
    - 관정 설치 시 발생 터파기 면적 : 3.04㎡, 터파기 부피 2.13㎡
    - 콘크리트 타설량 : 0.61㎡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후 잔토는 외부 반출예정)
  - 관정 설치 공법 : 공압 타격식(Air Percussion)공법
  - 설치작업으로 인한 소음 측정 예상 수치
    - 평작업 시 : 75dB 수준, 굴착기 타격 시 약 85~90dB 예상
    - 공사 지점과 방사장 최단거리 내 소음정도 약 71dB로 산출(거리에 따른 소음도 산정공식 적용)
- (6)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산양 보호구역내에 국가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를 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산양증식복원센터내 증식 사육중인 산양의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사업시행에 따라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부결 8명

### 13.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9호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59-3번지 등
  - 지정일 : 2001.9.1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63번지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60.3㎡
    - 건축면적/연면적 : 112.88㎡/112.88㎡
    - 최고높이 : 5.8m(지상 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 ※ 기존 건축물(단독주택) 규모
    - 건축년도 : 1987.12.29
    - 건축면적/연면적 : 49.58㎡/49.58㎡
    - 규모 : 지상 1층, 목조, 경사지붕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8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 1구역(2층 이하 증·개축 허용)

####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8m 이격된 1구역에 노후된 기존 주택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 사업 대상지 주변에 1층 규모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건축물이 신축되더라도 월령리 선인장군락에서 직접 조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9.21)

- 천연기념물 429호 월령리 선인장군락에서 35m 이격된 곳에 2층 이하 증개축을 허용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112.88㎡의 면적에 최고높이 5.8m(지상 1층)의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건임
- 신축부지의 위치가 인근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신축부지에서 선인장군락 방향으로는 기존의 건물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선인장군락지에서 마을 쪽으로 바라보는 조망에 신축건물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가결 8명

### 14. 「향로봉·건봉산천연보호구역」 내 \*\*\* \*\*도로 개설

#### 가. 제안사항

「향로봉·건봉산천연보호구역」 내 \*\*\* \*\*도로 개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향로봉·건봉산천연보호구역」 내 \*\*\* \*\*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47호 「향로봉·건봉산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일부, 고성군 수동면 일부, 간성읍 일부
  - 지정일 : 1973.7.1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 \*\*도로 개설
  - 사업위치 :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리 \*\*\*~\*\*\*번지
  - 사업내용 : \*\*\*\*\* 구간 도로 개설
    - L=2,620m, B=5m, 콘크리트 포장(T=20cm)
    - 최대 종단경사 39%, 최대 굴착고 10m
    - 암거 설치(6개소), 계비온 옹벽(H=2~5m) 설치
    - 절토사면 : 녹생토 보강, 성토사면 : 기존 발파암 활용 사면보호
  - ※ 당초 신청내용(\*\*\*\*\* 구간 \*\*도로 개설)
    - L=3,534.5m, B=3~5m(\*\*\*\*\* 구간 : L=914.5m, B=3m)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향로봉·건봉산천연보호구역 내 \*\*\*\*\*이 관리하고 있는 \*\*\*\*\*와 \*\*\*\*\*를 잇는 구간(총 연장 3.5km)에 전설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지조사 후 신청인이 \*\*도로 개설구간을 축소하여 재신청함
- \*\*도로 개설로 인해 천연보호구역 내 지형 등 일부 훼손이 예상되나 \*\* \*\*와 \*\*의 \*\*\* 확보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9.2)

- 본 사업은 향로봉·건봉산천연보호구역 내에 \*\*\*\*(\*\*\*\*\*~\*\*\*\*)를 연결하는 \*\* 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도로 개설로 인해 천연보호구역 내 지형 등이 일부 훼손되기는 하나, \*\* 및 \* \*\* \*, \*\*\* \*\* \* 등을 위해 \*\*도로 개설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에서 \*\*\*\*\*를 잇는 구간(L=914.5m, B=3m)은 지형 여건 상 도로 개설 시 과도한 지형 훼손 등이 우려되고 도로 개설 후에도 구조적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향후 \*\*\*\*\*에서 \*\*\*\*\* 구간을 잇는 \*\*도로가 개설된 후에는 \*\*\*\*\*를 \*\*\*\*\* 위치로 이전하고 기존 소초 부지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고성군 1차 제출의견 / 2016.8월)

- 본 공사는 \*\*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보수를 위해 소초 간 \*\*\*\*\* \*\*공간과 \*\*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현상 변경 허가신청을 한 사항임
-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으나 \*\*들의 안전과 \*\*\*\*\* 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바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고성군 2차 제출의견 / 2016.9월)

- 본 사업은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내에 \*\*\*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임
- 사업의 성격상 문화재를 훼손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기존 신청의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신청하였고, \*\*에 원활한 \*\*\* 공급, 유지보수 원활, \*\*시 \*\*\* \*\* \*\*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신청한 사항임으로 현상변경을 허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침식방지 등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조건부 가결 8명

## 15.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주변 성산리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 신축

### 가. 제안사항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주변 성산리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주변 성산리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번지 등
  - 지정일 : 2000.7.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20-3번지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062㎡
    - 건축면적 : 623.63㎡
    - 연면적 : 996.24㎡(1층 497.13㎡, 2층 499.11㎡)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일부 경사지붕 포함)
    - 최고높이 : 11.6m(지상 2층)
  - ※ 기존 건축물 규모
    - 건축년도 : 2004.2.27
    - 건축면적/연면적 : 330.05㎡/406.17㎡
      - 1층 : 노인복지시설(261.87㎡/철근콘크리트조)
      - 2층 : 노인복지시설(83.85㎡/경량철골조)
    - 부속건물 : 창고(60.45㎡/벽돌구조, 슬래브)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8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 : 3구역(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 신청 사업은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으로부터 128m 이격된 3구역에 노후된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축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11.6m로 허용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나 경사지붕이 아닌 평지붕으로 계획되어 금번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됨
- 현재 신축 건축물의 지붕이 일부만 경사지붕으로 계획되고 대부분 평지붕 형태이나 신청인이 향후 4층까지 증축할 계획이며 증축 시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시공할 계획인 점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9.21)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에서 128m 이격된 3구역에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건임
- 3구역에 위치한 관계로 건축물의 높이 및 건축면적/연면적 등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부합됨
- 허용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사항은 경사지붕 대신에 평지붕을 설계상에 반영한 점으로, 근간 4층까지 증축 계획 시 적극적으로 경사지붕을 반영할 예정이며, 현 신축에도 일정부분 경사지붕을 반영할 의사를 피력함에 비추어 볼 때 성산일출봉에서의 외부조망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신청인-\*\*\*\*\* 제출의견 / 2016.9.23)

- 기존 노인회관을 철거하여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차후 증축을 고려하여 일부 경사지붕 및 평지붕으로 건축하고자 함
- 2020년도 사업으로 지상 3층 지역주민 체력단련시설(364㎡), 지상 4층 지역아동 관련시설(364㎡) 증축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 완료 시 최상층 경사지붕으로 계획하고자 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향후 4층까지 증축할 경우 경사지붕으로 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조건부 가결 8명



## 16. 「제주 수산리 곶술」 내 수산리 포제단 비가림 시설 설치

### 가. 제안사항

「제주 수산리 곶술」 내 수산리 포제단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수산리 곶술」 내 수산리 포제단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본 사업은 2016년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4.6.22)에서 '제주 수산리 곶술 보호구역 내로 문화재에서 직접 조망되는 지역에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비가림 시설 설치는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지붕 마감재료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41호 「제주 수산리 곶술」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274번지 등
  - 지정일 : 2004.5.14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수산리 포제단 비가림 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산4-2번지
  -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2016.6.22/부결)	금회 신청
대지면적	496㎡	좌동
비가림 시설	○수 량 : 2개소 ○설치면적 : 76㎡ - A동 64㎡(8m*8m), H=3.0m - B동 12㎡(4m*3m), H=3.0m	○좌 동 ○좌 동 - A동 64㎡(8m*8m), <u>H=3.0~2.3m</u> - B동 12㎡(4m*3m), <u>H=3.0m~2.5m</u>

구분	1차 신청(2016.6.22/부결)	금회 신청
	○재 료 - 지붕마감(폴리카보네이트) - 기둥(구조용 각관) - 지붕(방부목) ○전석쌓기 : L=10m, H=0.8m	○재 료 - <b>지붕마감(OSB 합판/기와문양 칼라강판)</b> - 좌 동 - 좌 동 ○좌 동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금회 사업은 수산리 \*\*\*에서 관리하는 포제단에 제관 및 마을주민의 편의시설 확충 차원에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16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부결되어 신청인이 지붕 마감재료를 폴리카보네이트에서 기와문양 칼라강판으로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신청지가 제주 수산리 곶술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문화재에서 직접 조망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9.21)

- 천연기념물 441호 수산리 곶술 인근의 포제단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건임
- 수산리 곶술을 찾는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포제단의 비가림 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제안은 조망권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임
- 1차 신청한 폴리카보네이트의 비가림 시설이 문화재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듯이 기와문양의 칼라 강판 역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음식을 장만하고 보관하는데 필요한 간이시설(B동) 정도는 한쪽 편에 설치할 경우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부결
  - 제주 수산리 곶술 보호구역 내로 포제단 정면에 비가림 시설 설치하는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부결 8명

## 17.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 가. 제안사항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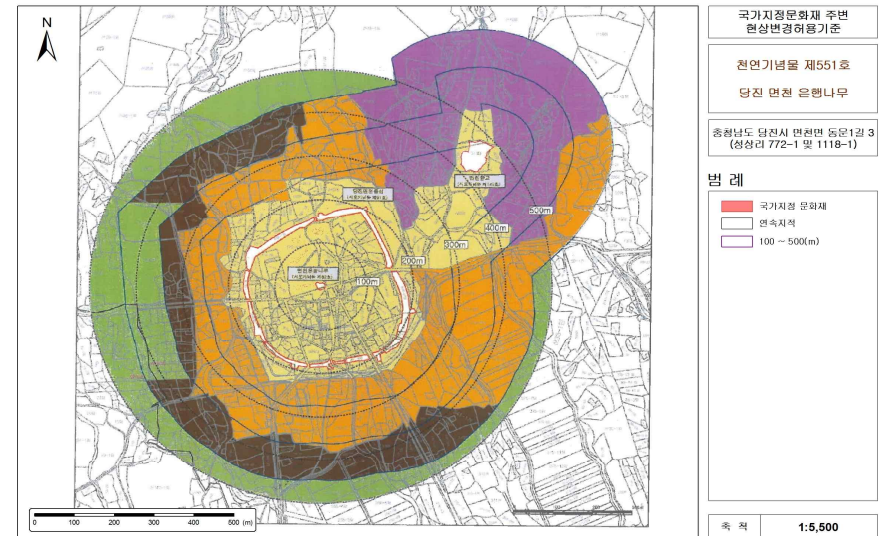
-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당진군수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1호 「당진 면천 은행나무」
  - 소재지 : 충남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772-1 번지 등
  - 지정일 : 2016.9.6.
- (3) 신청내용(당진 면천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평 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현상유지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증축 허용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2구역	○2층(8m 이하 허용)	○2층(12m 이하 허용)
3구역	○3층(11m 이하 허용)	○3층(15m 이하 허용)
4구역	○4층(17m 이하 허용)	○4층(21m 이하 허용)
5구역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1구역 및 2구역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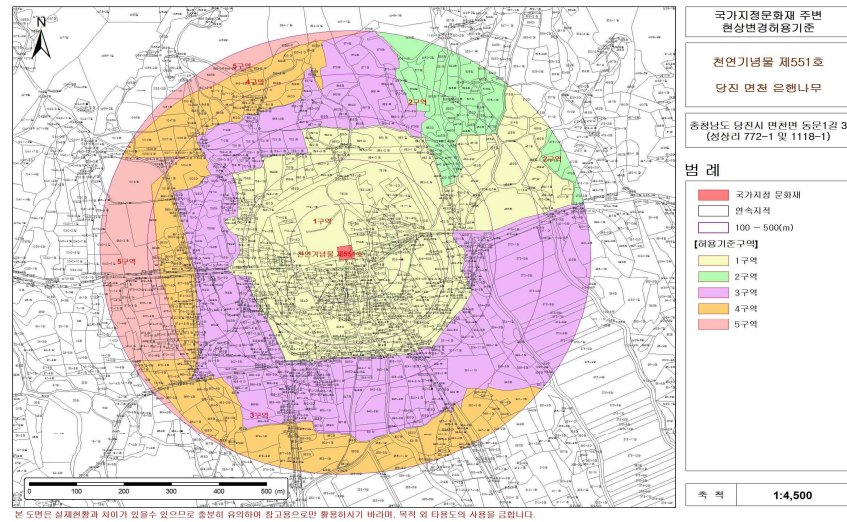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라. 검토의견(\*\*\*\*\*)

- 당초 충청남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던 당진 면천 은행나무 문화재구역은 364.3㎡ 이었으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930㎡로 확대하여 지정하였음
- 현재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대부분이 충청남도기념물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와 중첩되므로, 문화재구역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은 「당진 면천 읍성(충남도 기념물 제91호)」 및 「면천 향교(충남도 기념물 제141호)」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라 당진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조정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평 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	
2구역	○ 2층(8m 이하 허용)	○ 2층(12m 이하 허용)
3구역	○ 3층(11m 이하 허용)	○ 3층(15m 이하 허용)
4구역	○ 4층(17m 이하 허용)	○ 4층(21m 이하 허용)
5구역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문화재구역 이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해지는 현상변경 행위는 당진시에서 처리토록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조정안으로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조건부 가결 8명

안건번호 천기 2016-09-18

18.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주변 담수보 설치

가. 제안사항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주변 담수보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주변 담수보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7호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 소재지 : 강원 태백시 동점동 산10-1
  - 지정일 : 2000. 4. 2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황지천(구문소 하류) 담수보 설치 사업
  - 사업위치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498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담수보(L=90m, H=2.0m), 옹벽·보축(L=200m) 및 부대시설 설치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 12. 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75.2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3구역 : 태백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2호)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주변 담수보를 신축하는 건으로 문화재 소재 지역 수로의 수질과 수량 변화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관리단체 의견)**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 9. 23)**

- 담수보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구문소 하류지역으로, 구문소를 형성하는 황지천과 철암천이 합류하는 하류에 해당함.
- 신청지에 높이 2m의 보를 설치할 경우 저류지의 상부 수두가 구문소에 이르게 되어 구문소까지 하천이 정체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황지천 및 철암천에서 유입되는 퇴적물(사력)이 보 안쪽에 퇴적되고 이 퇴적물이 구문소를 향하여 역류하여 구문소를 매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높이 2m에 달하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보의 설치에 구문소와 구문소 하류의 하상 노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 전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 9. 23)**

- 2m 높이의 보를 설치했을 경우, 하천에 미치는 영향(수질, 보 주변에서의 침식·퇴적량, 하천 경관 등)에 대한 분석, 수위가 구문소의 어느 위치까지 도달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시가 있어야 함.
- 보 설치예정지와 그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지층(두무골층)에는 지질학적 가치가 큰 화석, 구조 등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보의 설치 시 지질학 전공자의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가치 있는 지질학적 자료들을 발굴·수거하여 부근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높이 2m의 보 설치에 구문소 주변의 수위변화 및 퇴적물 역류 등으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부결 8명

**19.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건물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구좌읍 동금녕리 산7 등
  - 지정일 : 1962. 12. 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행원리 주택 신축공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352-1
  - 사업내용 : 건물 9동 신축
    - 건축면적 553.59㎡, 연면적 857.79㎡(동별 건축면적 61.51㎡, 연면적 95.31㎡), 최고높이 7.9m(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 10. 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 :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핑크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단, 현지반선에서 1m 초과 기초 터파기 공사 시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건물을 신축하는 건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관리단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 9. 21)**

- 신청지역은 만장굴의 개방구간에 해당하며 출입구(제2입구)로부터 상류방향으로 680~720m에 해당하는 구간임.
- 이 지점을 현장 실사한 결과, 본 사업은 천장부분의 훼손이 우려되는 등 만장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사업지는 만장굴 내 낙석의 위험이 높은 구간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과도한 원지형 변화 시 만장굴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부결 8명

**【보고사항】**

안전번호 천기 2016-09-20

**2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18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59호 어름치	○ 신청인 : ***** ** ○ 허가사항 : 어름치 사유 ○ 허가목적 : 관람객 교육 및 전시 ○ 수량 : 50개체 ○ 허가기간 : 2016.08.24~2021.08.23.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장수하늘소 근육 등 시료채취(생식기 해부 포함) 및 표본제작 ○ 허가목적 : 한국산 장수하늘소의 행태학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 ○ 수량 : 폐사체 1개체 ○ 허가기간 : 2016.08.25~2016.09.24.까지 ○ 허가조건 - 제출된 연구계획서 대로 시행하되 연구를 위한 샘플링(생식기 해부 및 근육조직 채취) 이후 건조 표본 제작을 마친 장수하늘소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소로 이관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6호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소쩍새 폐사체 박제 ○ 허가목적 : 관람객의 전시·교육용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소쩍새	○ 수량 : 1개체 ○ 허가기간 : 2016.08.26~2016.10.25.까지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황조롱이 사육 ○ 허가목적 : 교육 및 전시 ○ 수량 : 1개체 ○ 사육장소 : ***** 맹금사 ○ 허가기간 : 2016.08.30~2021.08.29.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 신청인 : ***** ** ○ 허가사항 : 독수리 폐사체 소각 ○ 허가목적 : 폐사에 따른 소각 ○ 수량 : 1개체 ○ 허가기간 : 2016.08.30~2016.09.29.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 신청인 : ***** ** ○ 허가사항 : 참매 폐사체 소각 ○ 허가목적 : 폐사(건물과 충돌)에 따른 소각 ○ 수량 : 1개체 ○ 허가기간 : 2016.08.30~2016.09.29.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4호 쇠부엉이	○ 신청인 : ***** ** ○ 허가사항 : 쇠부엉이 폐사체 소각 ○ 허가목적 : 폐사(전신 충돌)에 따른 소각 ○ 허가수량 : 1개체 ○ 허가기간 : 2016.08.30~2016.09.29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452호 붉은박쥐	○ 신청인 : **** ○ 허가사항 : 붉은박쥐 폐사체 매장 ○ 허가목적 : 폐사에 따른 매장 ○ 허가수량 : 1개체 ○ 허가기간 : 2016.09.05~2016.09.30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7-3 번지(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 설치면적 : 9㎡(가로 3m*세로 3m) · 최고높이 : 2.8m · 방부목 휨스 마감 ○ 허가기간 : 2016.9.21~2017.9.20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안전관리 CCTV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3246 번지(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1개소(최고높이 4.0m) ○ 허가기간 : 2016.9.21~2017.9.20	<허가>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 상호동 한라자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주차장(주기장) 조성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610-1번지(문화재구역 연접/2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528㎡ · 주차장 조성면적 : 1,528㎡(콘크리트 포장 T=35cm) ○ 허가기간 : 2016.9.26~2017.9.25	<허가>
	천연기념물 제469호 예천 금당실 송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예천 금당실 송림 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542-1번지(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기존 정자 주변 시설물 설치 및 수목 식재 · 이동화장실(1동/한옥형/2.8m*6m*3.3m) 및 오수관 L=22m 매립 · 시비석(1개/3.5m*1.75m*0.5m)설치 · 디딤 자연석 포장 깔기(A=300㎡, T=5cm)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울타리(H=0.2~1.5, L=520m)</li> <li>· 관목 식재(진달래, 화살나무, 개나리 등, 1400주), 교목(소나무 7주), 잔디 752m<sup>2</sup></li> <li>○ 허가기간 : 2016.8.30~2017.7.31</li> </ul>	
	천연기념물 제244호 소백산 주목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기후변화에 따른 상록침엽수의 전국적 고사 및 생육불량 원인 연구</li> <li>- 사업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59-1번지(문화재구역 내)</li> <li>- 사업내용 : 연구용 카메라 및 구조물 설치 1개소</li> </ul> </li> <li>· 설치면적 : 4m<sup>2</sup>(2m*2m)</li> <li>· 최고높이 : 4m이하</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메라 및 구조물 설치는 등산로에서 가급적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선택하여 설치할 것</li> <li>- 단관파이프 구조물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으로 조정할 것</li> <li>- 연구사업 종료 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변경허가를 득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16.9.23~2025.12.22</li> </ul>	<조건부 허가>
	명승 제109호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2016년도 임도신설(간선임도)사업</li> <li>- 사업위치 :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산1-1</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8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 임도개설</li> <li>· 임도신설 550m (토공사, 수목제거, 사면녹화, 구조물공사 등), 수목제거 80주</li> </ul> </li> <li>○ 허가기간 : 2016.9.9. ~ 2016.12.31.</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명승 제22호 영광 법성진 숲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법성진길 도로확장공사</li> <li>- 사업위치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152-1 등 32필지</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5m이격(4구역)</li> <li>- 사업내용 : 주거지역 도로확장공사</li> <li>· 도로확장 : (기존) 길이 210m, 폭 2~3m , 아스콘 포장 도로 (변경) 길이 210m, 폭 6m, 아스팔트 포장 도로</li> <li>· 옹벽신축 : (북측사면) 길이 187m (옹벽 0.2~1m, 상부 사면처리), (남측사면) 길이 211.2m (옹벽 0.2m, 상부 사면처리)</li> <li>· PE 우수관 매립 : (우수관) 길이 66m, 직경 150mm (우수관) 길이 214m, 직경 600mm</li> <li>· 상수관 매립 : 길이 22m, 직경 16mm</li> <li>· 맨홀 7개소 : 깊이 1.5~1.9m, 직경 900m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6-09-27 부터 2017-08-31</li> <li>○ 허가조건: 사업구간 내 매장문화재분포지(약 50m)와 매장문화재 추정 동문지, 남문지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할 것</li> </ul>	<조건부 허가>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치수장 및 가압장 설치)</li> <li>- 사업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44-1</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6m 이격(3구역)</li> </ul> </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허가사항 변경 허가		- 사업내용(변경사항) : 조류차단막 길이 및 가압장 높이 증가, DAF설비동 신설			
		구분		당초허가 (15.11.3)	변경허가 (16.9월)
		조류차단막		R=18m, L=100m	R=40m, L=140m
		가압장		최고높이 8m, 철근콘크리트 구조	최고높이 8.3m,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골 구조
		DAF 설비동		없음	신설(건축면적 94.25㎡ H=7.0m)
		○ 허가기간 : 2015.11.3 ~ 2016.12.31 ○ 허가조건 : 조류차단막은 취수상황 발생 시 문화재청과 협의 후 설치하고, 취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 후 철거할 것			
명승 제17호 부산 태종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태종대유원지 노후 판매시설 정비공사 - 사업위치 : 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29-1 (문화재구역내) - 사업내용(변경사항) : 판매시설 2개소 건물외관 및 평면계획변경, 허가기간 연장 ○ 허가기간 : (당초) 2016.06.01.~2016.12.31 → (변경) 2016.06.01.~2017.05.31	<허가사항 변경허가>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 신청인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속리산 국립공원 법주사~세심정 탐방로 개선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허가 사항 변경 허가		- 사업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등 (문화재구역내)			
		- 사업내용(변경사항) : 화장실~태평휴게소 구간			
		구분		당초허가 (15.5.30)	변경허가 (16.9월)
		노면정비		600m	545m
		테크		목재계단 35m, 테크 150m	목재테크(수평형), 240m
		셉터		2개소	3개소
		○ 허가기간 : 2015.06.01. ~ 2016.12.31. ○ 허가조건 : 계곡 급경사 구간에 테크를 설치할 때 설치구간을 최소화할 것, 목욕소 부근으로부터 세심정에 이르는 구간은 현재 상태 유지			

나. 의결사항 : 원안접수